

아동학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 [1심]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원고	○○○ 외 8명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2명
판결선고일	2022. 9. 20. 원고일부승	비고	
사건개요	<p>○ 원고 아동들은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피고 A는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 원고 학부모들은 피고 A가 피해 아동들에게 2019. 4. 1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A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피고 A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됨.</p> <p>○ 원고들은 피고 A가 직무를 하면서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B는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학대를 호소하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대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p>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 A와 인천광역시는 공동하여 원고 ○○○ 측에게 1,600만원, ◇◇◇, ♡♡♡ 측에게 각 900만원씩, 총 3,4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아동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마지막 날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와 인천광역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에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금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약	<p>○ 피고 A는 피고 인천광역시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p> <p>○ 피고 B는 진상파악, 피고 A와 원고아동들의 분리, 아동학대 의심사건 신고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p> <p>○ 이 사건 학대행위로 원고들의 치료행위 등이 일부 필요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치료비 액수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3,400만원으로 산정함.</p>		